

# 보험 Pooling System 과 強制保險



김관치  
(기획조정실장)

## 1. 서론

최근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경제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불어 닥치고 있는 미국의 손해보험시장 개방압력 문제등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어떤 특정위험에 대한 보험의 Pooling System 도입운영과 강제보험을 채택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시장개방등의 강력한 압력이 밀려 오고 있는 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개방등을 논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보험 Pool”의 확실한 개념과 나라에 따라 전통과 특색등으로 인한 필요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강제보험”의 내용과 이의 운영방식등을 알아 보고, 우리나라의 특수건물 강제보험과 Pooling System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해 두고자 한다.

## 2. Pooling의 정의

미국 Southern Illinois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인 Lewis E. Davids가 지은 1983년도 제6차 개정판 “Dictionary of Insurance”를 보면, 보험 Pool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로 합의된 근거에 의하여 어떤 위험을 분산하여 책임질 목적으로 공동참여한 보험회사들의 단체”(Group of insurance companies that have join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sharing certain risks on an agreed-upon basis)

그리고 Pool을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공동계산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경제학에서는 이윤분배를 위한 공동계산의 협정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보험 Pool은 거대위험의 공동소화 또는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이에 수반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동보험 (Co-insurance) 또는 보험카르텔 (Insurance Cartel) 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저마다 다음과 같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 유사용어의 주요내용대비

구분	Pool	Cartel	Co-insurance
목적	○ 거대위험의 공동소화, 책임분산	○ 경쟁제한, 시장 지배	○ 거대 위험의 공동소화
내용	○ 위험의 공동인수 및 관리 ○ Engineering-Pool	○ 가격(요율), 영업, 지역, 계약조건등의 제한	○ 위험의 공동인수
운영형태	○ 조직적, 계속적 ○ 회원간에 연대책임	○ 계속적, 조직적	○ 임시적, 비조직적 ○ 참여회사간 연대책임관한

실제 세계적으로 보험 Pool은

- ① 개별보험회사의 담보능력의 한계성
- ②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따른 EML (Estimated maximum loss)의 신뢰성 결여
- ③ 개별보험회사의 방재기술 분산에 따르는 기술 부족 및 비용의 과다지출등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게는 국내의 몇 개 보험회사로 부터, 크게는 국제적으로 수 10 여개의 보험회사 간에 조직 운영되고 있다.

특히 특정 대형위험에 대한 보험(예: 원자력보험, 항공보험, 석유화학관련보험등)의 인수 및 관리는 Pooling System에 의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주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 3. 외국의 보험 Pooling System

가. 미국

미국에 있어서 손해보험사업은 ① 주식회사 ②

상호회사 ③ Reciprocal exchange ④ American Lloyd's 등 4가지 기업형태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이 전국에 약 3,000개가 있고, 이들은 거의가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밑에서 활동하는 group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group은 약 100개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표 2) 미국의 손해보험사업자 현황

(1978년도) (단위: 백만불, %)

구분	형태별	주식회사	상호회사	Reciprocal	Lloyd's	계
수입보험료비중		69.7	24.7	5.5	0.1	100
회사 수		382,500	38,400	48	32	383,000
총 자산		117,545	35,460	6,923	132	160,060
수입보험료		57,433	20,302	4,548	58	82,341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통계상 영업방식의 특징에 따라 ① 대리점제회사(Agency Company) ② 전문회사(Regional/Speciality Insurers) ③ 직급제회사(Direct writer or Direct writing Company)의 3종류의 형태로 분류하며, 이들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표3)과 같다.

(표 3) 연도별 기업형태별 시장점유율

연도	대리점제회사	전문회사	직급제 회사
1980	45.6	17.6	36.8
1981	45.0	17.6	37.4
1982	44.0	17.6	38.4
1983	42.8	17.8	39.4
1984	42.6	18.2	39.2

(주) ① 대리점제회사(Agency Co.): 전통적인 대리점, 브로커제도 아래 모든 손해보험종목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기업보험분야로 대중을 이루고 있음.

② 전문회사(Regional/speciality insurers): 한정된 판매지역 및 보험종목에 대하여 영업

③ 직급제회사(Direct writer): 가계보험분야로서, 자가용 자동차보험 및 주택종합보험 등에 중점적인 영업

한편, 이와 같은 Group 경영체제와는 달리, 자본참여도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협동적으로 여러가지 보험공동인수단체(Pool)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그 대상물건을 대형위험의 원활한 분산이 필요한 분야와 특수한 Know-how를 요구하는 물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공동인수 단체로서 Pool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Pool현황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미국의 주요 Pool 현황

분 야 별	Pool 단 체	내 용
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ll American Marine Ship(1972)</li> <li>○American Marine Insurance Group(1974)</li> <li>○American Hull Insurance Syndicate(1920)</li> <li>○William H. McGree &amp; Co., Inc(18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 해상보험</li> <li>○해상에서의 석유관련물건</li> <li>○해상화물보험의 한-재보험</li> <li>○일본제의 브라질계 각 1개회사</li> <li>○선박보험</li> <li>○New-York에서 면허받은 보험회사들로 회원구성</li> <li>○적화보험, 선박보험, 해상책임보험</li> <li>○보험의 인수, 손해사정, 발전활동등의 전개</li> </ul>
비해상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ssociated Lumber Mutuals</li> <li>○Factory Mutual System</li> <li>○Improved Risk Mutuals(1921)</li> <li>○Industrial Risk Insurers(1890설립 → 1965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판권, 재계약 권인의 상호보험회사들로 구성</li> <li>○전미국, 캐나다에서 발전활동 전개</li> <li>○오래된 4개 상호회사로 구성</li> <li>○고도발전물건(highly protected risk)의 보험인수(공정, 창고, 대형일반물건)</li> <li>○발전전문가들 두고 발전연구팀 기술발상에 노력</li> <li>○기업물건의 화재보험공동인수</li> <li>○상호회사, 주식회사등 17개사가 회원</li> <li>○일본, 캐나다등도 회원</li> <li>○미국, 캐나다의 highly protected risk에 따른 보험의 공동인수</li> <li>○45개사가 회원</li> <li>○회원조사, 손해사정, 발전활동등 전개</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FIA(1918)</li> <li>○AIU</li> <li>○Associated Aviation Underwriters(19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손해보험의 미국보험회사들의 대리업무를 대행(공동인수)</li> <li>○세계 80개국에 약 230개 지점과 약 5,000개의 대리점망 구축</li> <li>○공동인수업무는 AFIA와 동일</li> <li>○세계 130개국 이상의 지역에 진출</li> <li>○모든 분야의 항공보험 취급</li> <li>○38개사가 회원</li> </ul>

### 나. 영국

영국의 손해보험시장은 크게 보험회사시장(Company Market)과 로이드시장(Lloyd's Market)으로 나누어진다. 보험회사시장의 보험료 수입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이드시장의 보험료수입은 나머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드시장의 해상보험료는 전체 해상보험료의 약 60%에 달한다.

그리고 보험계약모집방법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거대하고 복잡한 위험에 대하여서는 주로 「브로커」를 이용하고, 그 밖에 사소한 위험에 대하여는 대부분 대리점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로이드」는 "name"이라고 불리워 지고 있는 Underwriting Member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험기술이 복잡다양화해지고, 보험금액이 거액화함에 따라 Syndicate를 조직해서 보험인수의 전문대리인으로서 Underwriter를 고용하여 위험의 선택, 요율의 산정, 손해의 사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의 업무 일체를 맡기고 있다. 이러한 Underwriter들은 일반보험계약자와 직접거래치 않고 특정의 Broker가 제의해 온 보험계약만을 인수한다. 이들 Broker는 고객(피보험자)으로 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받으면, Underwriter로부터 적절한 보험을, 가장 유리한 요율로 체결할 조건등을 얻어 내는 사명을 띤 피보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보험선도국인 영국의 손해보험시장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관습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세계적

인 거대위험의 소화도 무리없이 처리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 있어서 보험산업은 그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시장과 「로이드」시장을 합한 영국 손해보험사업자의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의 약 60%가 해외로부터의 수입(受再保險)임을 보면, 보험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항공보험, 석유화학관련보험, 원자력보험등과 같은 거대한 위험에 따른 보험계약의 인수는 공동으로 처리하는 Pooling System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항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시장에 “British Aviation Insurance Company”와 “Aviation & General Insurance Company” 2개의 전문적인 Pool 회사가 조직되어 회원회사를 위하여 동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다. 그리고 「로이드」시장에서는 항공보험 전문 Syndicate Group이 발달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 Pooling System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International Oil Insurers(I. O. I.)이다.

I. O. I. 는 1974. 6. 1. Flixborough에 있는 「카프롤락탐」공장에서 「사이클로 핵산」유출로 인한 대형 폭발사고(재산피해액 : 약 180백만US\$)의 발생으로 종전 EML의 평가개념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고, 대형위험에 대한 개별회사의 단독인수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무리라는 것이 밝혀져, 석유 및 「가스」산업 등의 대형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1975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I. O. I. 는 회원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석유화학, 「가스」 및 「오일」산업의 위험분석, 보험요율의 산출, 보험계약의 공동인수 및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대형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 Pool은 물론, 기술 Pool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ool은 최초 영국의 10여개의 유수한 손해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점차적으로 EC회원국인 주변국가에서도 동 Pool에의 참여 필요성을 느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손해보험회사가 참여하여 최근에는 회원회사가 40

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다. 일본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는 현재 원수회사 21개사와 재보험회사 2개사 합계 23개사가 있으며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장대신의 면허를 얻어 지점 및 대리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외국손해보험업자가 41개사가 있다.

일본은 70년대 중반에 와서 자본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시장의 개방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개방체제로의 이행준비로서 1963년 6월에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등, 그 준비는 1960년대 초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4년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후, 1965년에 OECD로부터 자본자유화 압력을 받으면서 시장개방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손해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한 담보력의 증강, 요율의 합리화, 담보범위의 확대, 자동차보험의 개선, 해외시장진출, 모집조직 및 재보험기구의 개선 등 원천적인 체질개선책을 추진하는 등 모든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후, 1975년에 와서 실질적인 손해보험시장의 개방조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외국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1984년도에 약 4%로서 아직도 보잘 것 없는 미미한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의 손해보험Pool은 과거 1920년대에 경영의 악화, 과당경쟁등으로 결성된 바 있고, 현재에는 국가정책상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과 항공보험 등이 Pool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기 사항으로서는 1975년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바 있는 해양전람회와 관련하여 보험부몰건을 Pool 형태로 인수한 바 있고, 1985년의 「쓰꾸바」전람회의 보험Pool을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Pool의 회원회사는 국내의 21개 원수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 41개사중 3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외국사 32개사는 전체시장의 4%에 해당액을 분할배분받는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험Pool이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화재보험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조립, 동산종합 배상책임보험등 손해보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다음호 계속>